

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(제59조제3항 관련)

1.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일반원칙

가.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포함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로 한다.

나. 가목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재료와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 또는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.

다.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를 할 수 있는 식품인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.

- 1) 해당 식품에 별표 15에 따른 무농약농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
- 2) 무농약이라는 용어를 식품명 또는 식품명의 일부로 표시

2.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

가. 70퍼센트 이상이 무농약농산물인 식품

- 1) 최종 식품에 남아 있는 원료 또는 재료(물과 소금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70퍼센트 이상이 무농약농산물이어야 한다.
- 2) 무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식품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다.
- 3) 표시장소는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.
- 4) 원재료명 표시란에 무농약농산물의 총합량 또는 원료·재료별 함량을 백분율(%)로 표시해야 한다.

나. 70퍼센트 미만이 무농약농산물인 제품

- 1) 특정 원재료로 무농약농산물만을 사용한 식품이어야 한다.
- 2)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"무농약"이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.
- 3)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.
- 4) 원재료명 표시란에 무농약농산물의 총합량 또는 원료·재료별 함량을 백분율(%)로 표시해야 한다.

3. 제한적 무농약 표시 사업자의 준수사항

제한적 무농약 표시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식품에 사용된 무농약농산물의 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 등 표시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장 내에 갖추어 두고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.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